

## 제 24 장 예외

### 제 24.1 조 일반적 예외

1. 제2장(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), 제3장(원산지 규정), 제4장(원산지 절차), 제5장(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), 제6장(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), 제7장(무역에 대한 기술장벽) 및 제8장(무역구제)의 목적상,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해석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2. 제9장(투자), 제10장(국경 간 서비스무역), 제11장(기업인의 일시입국), 제13장(통신) 및 제14장(전자상거래)<sup>1)</sup>의 목적상, 그 각주를 포함한 GATS 제14조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.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,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.

### 제 24.2 조 필수적 안보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가.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

---

1) 이 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.

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, 또는

- 나.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,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

### 제 24.3 조

#### 정보의 공개

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,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### 제 24.4 조

#### 과세

1.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2.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,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. 양 당사국간 조세협약의 경우, 그 협약에 따른 권한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.

3. 제2항에도 불구하고

- 가. 제2.2조(내국민대우)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

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그리고

나. 제2.11조(수출세)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#### 4. 제2항을 조건으로

- 가. 제10.2조(내국민대우) 및 제12.2조(내국민대우)는 특정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,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다만,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해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. 그리고
- 나. 제9.3조(내국민대우) · 제9.4조(최혜국대우), 제10.2조(내국민대우) · 제10.3조(최혜국대우) 및 제12.2조(내국민대우) · 제12.3조(최혜국대우)는 소득,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 또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

#### 5. 제4항은

- 가.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혜택에 대해 최혜국대우의 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나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다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- 라.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제4항에 언급된 어떠한 조들과의 합치성을 개정시점에서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,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 또는
- 마. GATS 제14조라호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,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.

#### 6. 제2항을 조건으로,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

저해함이 없이, 제9.7조(이행요건)는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.

7. 가. 제9.12조(수용) 및 제9.16조(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)는 수용이 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. 그러나, 이 항에 따라 그 조 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, 어떠한 투자자도 제9.12조(수 용)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.<sup>2)</sup> 과세조치에 대해 제9.12조 (수용)를 원용하려는 투자자는 제9.16조(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 결)에 따른 서면 의사 통지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과 관련 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권한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해야 한다. 권한 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, 검토하기로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부터 6개월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 가 수용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, 투자자는 제9.16조 (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)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 다.

나. 이 항의 목적상,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1) 대한민국에 대해서는,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의 승계인, 그리고
- 2) 폐루에 대해서는, 경제재정부 또는 그의 승계기관

8. 이 조의 목적상,

가. 세금 및 과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.

- 1) 제1.4조(일반 정의)에 정의된 바와 같은 관세, 또는
- 2) 제1.4조(일반 정의)에 규정된 관세의 정의 중 나호 및 다호에 열거된 조치, 그리고

---

2) 과세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제9.12조(수용)와 관련하여, 다음의 고려는 적절하다.

- 가) 세금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.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투자에 대해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.
- 나)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·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. 특히, 조세 회피 또는 탈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. 그리고
- 다)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한 개인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,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 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다. 과세조치가 투자가 이루어질 때에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표되었거나 달리 공개된 경우, 그 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.

나.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.

## 제 24.5 조 국제수지 예외

1.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협에 처한 경우, 그 당사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.

2.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제한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.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조치는 비차별적이고 그 기간이 제한되며,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한다. 그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고, 적용가능한 대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과 부합해야 한다.

3. 제한조치 또는 그것의 변경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택한 당사국은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하고, 그것의 제거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시한다.

4. 제한조치가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경우,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가 신속히 개최된다. 그러한 협의는 특히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당사국의 국제수지 상황 및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들을 평가한다.

가.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의 성격 및 범위

나. 대외 경제 및 무역 환경, 또는

다. 이용가능할 수 있는 대안적 시정 조치

협의는 모든 제한조치가 제2항 및 제3항에 합치하는지를 다룬다. 외환, 통화 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이 제출한 통계 및 그

밖의 사실에 대한 모든 조사결과는 수락되며, 결론은 관련 당사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근거한다.